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기를 꽃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80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기를 꽃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안 제40조의2 및 제102조제10호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8. 14.

다. 회 부 일 : 2025. 8.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꽃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꽃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꽃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꽃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꽃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계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안 제40조의2 및 제102조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0조의2(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u>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옥외에 외기(外氣)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해당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주택의 옥외에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 안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제102조(벌칙) ----- ----- -----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11. ~ 19. (생략)	<u>10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국기를 꽃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u> 11. ~ 19.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국기를 꽃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기를 꽃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주택의 난간에 국기를 꽃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국기를 꽃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의 옥외에 외기(外氣)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를 꽃을 수 있는 시설을 해당 난간에 설치하고(안 제40조의2제1항), 주택의 옥외에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 안에 국기를 꽃을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안 제40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국기를 꽃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제10호의2).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발코니를 실내공간으로 변경한 주택 또는 통유리를 사용한 주상복합 건축물 등 발코니가 없어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제4항¹⁾에 따르면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각 동 지상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에 설치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예외 없이 의무사항으로²⁾ 하려는 것임.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난간)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는 2025. 9. 1.까지 세대별 국기봉꽂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의 단서조항 문구를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개정안은 국기(國旗)로서 국가상징의 하나인 태극기³⁾의 게양⁴⁾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 사랑을 드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모든 국민이 국기인 태극기를 존중하고 애호하도록 한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⁵⁾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첫째, 난간 아닌 곳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유에 관하여 안 제40조의2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⁶⁾상 사유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3)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4)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5)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난간)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인정하는 경우'로 보다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설치 사유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안 제4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 해당 주택의 난간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⁷⁾)에게 개정법률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안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⁸⁾)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관리주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9.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제3조(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주택의 난간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난간에 국기를 꽂는 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기존주택의 수범자에게 과도한 형벌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설치의무의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것인지는 나라 사랑과 태극기 애호·존중 사상을 전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형벌 부과에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국기 게양이 용이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이미 현행 법령에 동일한 내용의 설치의무 규정이 존재하고, 개별 세대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각 동의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⁹⁾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은 위반 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축 주택에 대한 부칙의 경과조치는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76

9) 국토교통부는 2025. 9. 1.까지 세대별 국기봉꽂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의 단서조항 문구를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